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074
----------	-------

발의연월일 : 2025. 12. 10.

발 의 자 : 이성권 · 고동진 · 서천호
이헌승 · 정성국 · 백종현
이만희 · 최보운 · 박상웅
김승수 · 김용태 · 강명구
조은희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과 민간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으로 안보 위협과 국익 훼손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임. 정부 부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은 일상화되고 있고, 최근 발생했던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통신사 등 민간 대상 사이버 공격은 큰 피해를 초래했음.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 공격을 확인 · 견제 · 차단 등의 대응조치와 사이버 안보 정책이 다뤄지고, 국가의 이익과 안전보장과 국민의 사이버 공간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음. 그러나 현행은 기관별로 사이버 관련 정책과 책임, 대응이 분산되어 있어 정보와 기술공유를 비롯한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이버 안보 정책을 수립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며 사이버 관련 기관 간 역할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할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 정책이 다뤄지도록 하려는 것
임(안 제5조의2).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의 설치 등) ① 사이버안보(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 등 위협행위자들이 행하는 사이버공격을 확인·견제·차단하고 그에 필요한 대응조치를 강구·이행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사이버공간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이버안보와 관련한 전략·정책·법령 및 예산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수립 등 중장기 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사이버안보 위해자 및 배후 국가·단체에 대한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4.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 및 기관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5. 사이버안보 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국방부장관

3. 국가정보원장

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6. 사이버안보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2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국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인 사이버안보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사이버공격·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두고, 사이버안보 관련 사항의 전문적 검토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와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조의2(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u> <u>의 설치 등) ① 사이버안보(북</u> <u>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u> <u>· 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u> <u>계된 내국인 등 위협행위자들</u> <u>이 행하는 사이버공격을 확인</u> <u>· 견제·차단하고 그에 필요한</u> <u>대응조치를 강구·이행함으로</u> <u>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u> <u>사이버공간 활동에 지장을 초</u> <u>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u> <u>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u> <u>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u> <u>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u> <u>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u> <u>다)를 둔다.</u> <u>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u> <u>항을 심의한다.</u> <u>1. 사이버안보와 관련한 전략·</u> <u>정책·법령 및 예산의 개선에</u> <u>관한 사항</u> <u>2.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수립</u> <u>등 중장기 대책 수립 및 추진</u>

	<u>에 관한 사항</u> <u>3. 사이버안보 위해자 및 배후</u> <u>국가·단체에 대한 대응조치</u> <u>에 관한 사항</u> <u>4.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 및 기</u> <u>관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u> <u>5. 사이버안보 실태 평가에 관</u> <u>한 사항</u> <u>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u> <u>치는 사항</u> <u>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u> <u>합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u> <u>성한다.</u> <u>④ 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u> <u>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u> <u>람이 된다.</u> <u>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u> <u>2. 국방부장관</u> <u>3. 국가정보원장</u> <u>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u> <u>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u> <u>중앙행정기관의 장</u> <u>6. 사이버안보 관련 전문지식과</u> <u>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u> <u>령이 위촉하는 사람</u> <u>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2명을</u>
--	--

두며,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국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인 사이버안보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사이버공격·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두고, 사이버안보 관련 사항의 전문적 검토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와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